경제불황과 공정거래제도 운용

- 경기 부진과 공정거래제도 운영 -

배한경

서울여자대학교 경제학과 교수

경기부진의 진단과 대책

우리경제는 올해 상반기동안 경제성장율의 둔화와 경상수지적자폭의 급격한 확대를 보이는 가운데 물가는 여전히 오르는 심상치 않은 양상을 보이고 있다. 한편 우리의 수출주도형 경제의 견인환경이 되고 있는 선진국의 경제는 긴 경기부진에서 탈출하여 빠르게 회복하고 있다. 여기에 당면한 한국경제 상황을 새롭게 진단 해야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자본주의 경제의 경기는 약 50년 주기의 장기순환의 추세 속에서 중기 내지는 단기적인 경기순환을 반복하고 있다고 경제학 교과서에서는 설명하고 있다. 특히 슘페타는 이같은 자본주의 경제의 경기변동은 자본주의의 혁신·동태적인 현상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한편 오늘날 국제자본주의는 전기, 화학 그리고 석유관련 공업의 혁신이 주도한 장기순환의 제3순환이 완료되고 1960년경부터 원자력, 전자, 정보산업을 중심으로 한 제4순환이 개시되었을 뿐 아니라, 특히 제3순환과 다른 점은 제3순환의 핵심공업이었던 중화학공업이 질적으로 더욱 정밀해지는 가운데 전자·정보 공업과 결부되어 복합적인 형태로 발전하고 있다고 경제학자들은 설명하고 있다.

따라서 60년 초부터 시작한 한국경제의 공업화 성장과 발전도 이 틀 안에서 이루어져 오고 있다고 본다면 1970년말까지 3순환의 최종국면의 중후장대형 중화학공업의 양적 확대성장을 이룩하였고 80년이후부터 이들 중화학공업의 정밀화를 미처 완성하지도 못한 가운데 새롭게 전자, 정보공업을 새롭게 도입, 개발이 초기적으로 진행되고 있다고 설명할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볼때 당면한 경기부진의 급속한 성장율의 둔화는 한국경제의 공업화가 양적성장체제(Growth)에서 질적발전(Development)으로의 이행을 국제경제적 차원에서 강요당함에 있어 이를 감당할 능력이 미흡한데서 오는 애로적인 현상이라고 생각된다. 이는 과거 우리경제의 부진극복의 경험을 분석해보면 알 수 있다.

70년 이후 한국경제의 성장추이를 보면 10년 단위를 전후하여 급락하는 현상을 보인다.(이른바 일부학계에서 말하는 10년 주기설이다.) 70년초의 저성장적인 경기불황은 양적인 내·외자 부족에서 기인하였으므로 이를 타개(73년「8. 3 조치」 80년말까지의 중동특수, 월남특수)함으로써 이를 극복할 수 있었다. 그러나 80년초의 저성장은 이른바「3저」로, 90년초는「신3저」를 지렛대로 하여 성장감속을 막아낼 수 있었다.

이는 한마디로 70년대까지의 한국 중화학공업

은 물량 공세로 위기를 극복할 수 있었지만 90년에 가까워 오면서 질적·가격 경쟁력면에서 양적 성장면에 제동이 걸려오기 시작하였고 당면한 저성장과 경기부진은 이같은 한계적인 양상이 더욱 심화되었음을 나타내고 있음을 보여주는 현상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이는 당면한 경기 하강이 새로운 「엔」저 - 고 「원」(1995. 7 ¥100 : W856→1996. 7 ¥100 : W753) 반도체의 국제가격시황의 폭락에 따른 반도체수출의 급락을 시작으로 하여 자동차, 철강, 선박등의 수출위축이 이른바 대외불균형주도의 경기부진으로 확산되고 있음이 이를 반증하고 있다.

그러면 당면 경기부진의 구조적인 성격을 이같이 파악한다면 경기부진의 순환적인 특성을 어떻게 보아야 할 것인가가 문제이다.

올해 1/4분기의 성장율 둔화현상에서 비롯된 당면한 경제 내지는 경기의 흐름에 대하여 그동안 정부의 「성장율안착진행현상관」과 경제계의 「심각한 불황」 이라는 의견의 차이를 보여오다가 최근에 와서야 한국경제 전반의 구조적 경쟁력약화의 누적현상이라는데 의견의 일치를 보이고 경쟁력 10% 향상노력에 공감하고 대책을 강구하고 있다.

이같은 현실적인 논의에 비추어 오늘의 부진의 성격과 순환적 현상의 특징은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을 것이다. 첫째, 당면한 경기부진은 한국경제의 공업화 성장에 있어 양적성장이 새로운 질적발전으로의 이행 애로를 배경으로 하며 성장기반약화의 심화로 노정된 가운데 경기면에서는 기업의 생산면의 경영력약화로 나타났고 여기에 여전한 인플레이션 지속은 자칫 한국경제 체질약화에 따른 새로운 스태그 플레이션으로 발전하지 않을까 우려케 하고 있다.

따라서 이같은 경기부진의 경제성장국면의 추세적인 애로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금후 한국경제성장의 기조를 내실과 안정성장의 방향으로 그 궤도를 수정하고 이른 발전성장 체질을 구축하기 위하여 새로운 산업구조·체질의 고도화가 이룩되어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서 기존의 중화학공업을 정련화(精鍊化)시키는 산업체질강화 방안을 세워 이 방안에 따라 이들 산업에 속하는 기업경영의 전환을 경쟁력강화 촉진의 차원에서 유도해야 할 것이다.

이와 관련하여 현재 통상산업부가 추진하고 있는 첨단산업발전 5개년계획도 다분히 신규 창업기업개발에 주안을 두어 추진할 것이 아니라 기존 대기업으로 하여금 그 방향으로 경영체제의 중점을 전환하도록 유인·지원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정부는 금후 한국경제는 내실있는 상대적 저성장을 목표로 한다는 점을 분명히 밝혀 이에 맞게 소비의 안정적 견실화를 유도해야 할 것이다.

이렇게 될 때 고성장을 기대한 경영계의 기업그룹지향의 확장이나 노동계의이른바 성장율과 인플레이션율 기준의 임금인상 욕구를 자연스럽게 억제할 수 있는 효과도 아울러 거둘 수 있을 것이다.

둘째, 당면한 경기부진이 대외불균형 심화에 의하여 선도·견인되고 있다는 점이다. 이른바 국제수지천정의 불황초래유형이며 과거 한국경제는 외자의존성장의 덕으로 한번도 경험하지 않았다.

이에 대처하기 위해서는 앞에서 말한 전반적인 중화학공업체질의 정련화의 틀안에서 우리나라 수출기업이 고품질·고특성품목의 수출상품 생산으로 방향을 전환하게 하고 수출시장의 다변화 촉진과 기존시장도보다 심화시켜야 할 것이다.

이는 개방확대에 따른 수출기업의 경쟁력강화 차원에서 이밖에 별다른 방도가 없지만 여기에는 공공부분과 금융산업의 과감한 구조혁신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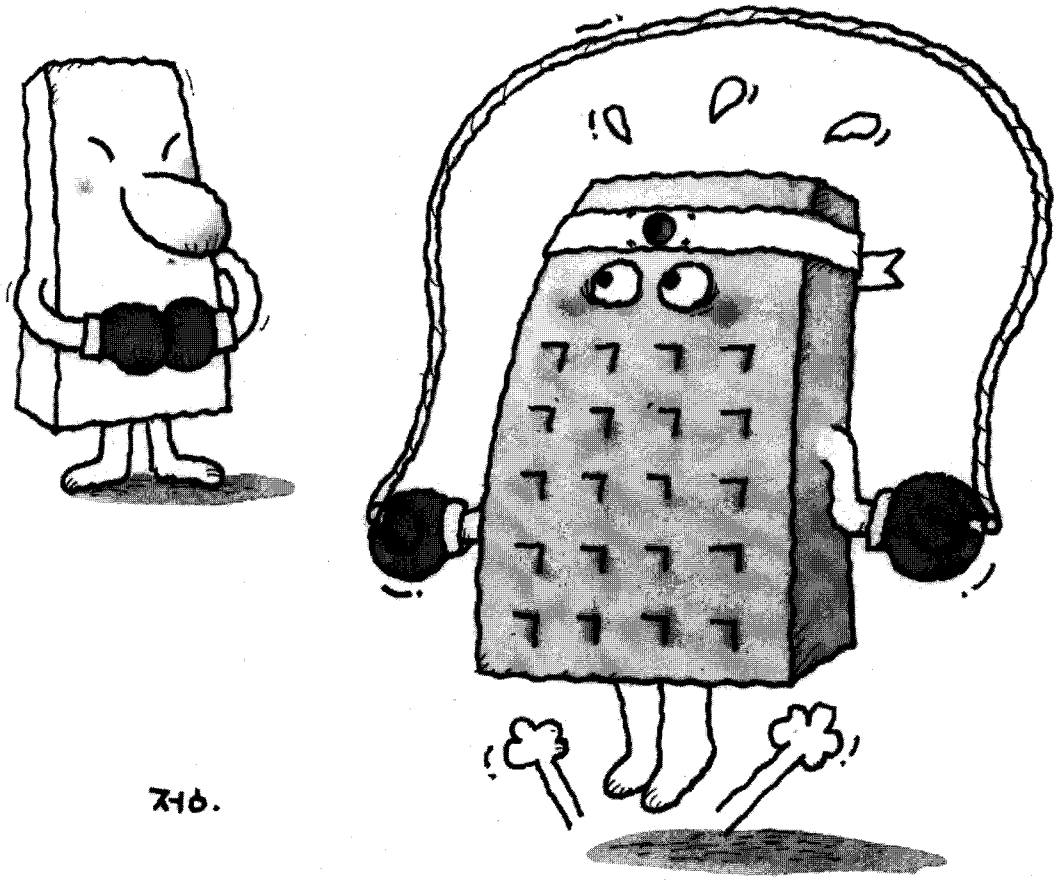

경영체질강화를 통해 민간기업이 해결할 수 없는 고금리, 고지가, 고물류비 등이 해결되지 않고는 자칫 개방이 일방적인 시장축소의 강요의 결과를 초래할 수 있음을 유념해야 할 것이다.

이와 관련하여 오늘날 「돈놀이」적인 낙후된 금융산업에 있어서의 낙후된 구조나 경영방식을 앞으로 치열한 경쟁을 통하여 「돈장사」를 하는 금융이 되도록 금융산업을 혁신하여 이른바 호성선단적인 금융과 기업과의 관계를 탈피하지 않고는 기업체질 강화는 이룩될 수 없을 것임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요컨대 성장체제의 전환, 산업구조의 첨단화·정련화 그리고 기업체질의 강화에 의한 당면 경기부진의 극복은 결국 한국기업으로 하여금 종래와 같은 양적성장이 아닌 질적혁신을 하게 하는 경쟁체제를 갖출 때 그 실효를 거둘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금후의 공정거래제도의 운영 역시 새로운 방향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경영혁신 촉진의 공정거래제도 운영

금후 한국기업이 이룩해야 할 경영혁신의 과제는 ①기업간 경쟁체제를 종래와 같은 양적·성

장지향에서 자원이용의 효율을 중심으로 한 질적발전 체제로 전환·향상시키는 일 ②내·외시장에 있어 선진공업국기업과 경쟁할 수 있는 대외경쟁력을 높이는 일로 집약된다.

따라서 앞으로의 공정거래제도 운영도 이같은 기업의 경영혁신을 유도하는데 두어야 할 것이다. 정부는 금번 공정거래법의 개정을 통하여 ① 부당한 공동행위(카르텔)의 규제강화 ②대규모 기업집단의 경제력집중의 가일층의 축소 ③기업결합의 제한범위확대 등을 통하여 이에 대응하고자 하고 있다.

1. 부당한 카르텔행위의 금지 강화

정부는 앞으로 카르텔행위를 규제함에 있어 현행의 열거방식에서 포괄적인 규제방식으로 전환함과 동시에 사업자단체에 의한 구성사업자에 대한 부당한 카르텔의 유도나 지원 그리고 타사업자의 경영행위 방해도 규제하고자 하고 있다.

카르텔은 경제가 정상적일 때는 기업공동으로 독과점적인 이익을 추구·공유하고자 하는 데서 발생하나 경제가 전반적으로 난숙기에 있거나 불황 또는 개방이 촉진될 때는 저효율의 기존기업이 살아 남기 위하여 행해질 경우는 한계적 기업의 성장이라는 역설적인 현상이 발생하기도 한다.

따라서 열거주의 방식의 카르텔 규제는 경제가 정상적일 때는 타당하지만 경영환경이 경제체질 조정적인 경기부진이나 개방을 촉진해야 할 경우에는 포괄적으로 규제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다. 다만 행정편의적인 법 집행의 부작용은 극력 회피되어야 한다. 그렇지 않을 경우 개방적인 대응을 경쟁촉진 면에서 정부가 실패하는 이른바 「정부 실패」를 초래할 가능성이 있음을 정부 당국자는 깊이 유념해야 할 것이다.

한편 사업자단체의 카르텔 유도행위에 대한 규제는 현실적으로 사업자단체 자체의 존립을 목적으로 한 구성기업들에 대한 위장적인 경쟁의 결과 아래서 실질적으로 제 삼자에 의한 기업들의 카르텔 행위의 유도를 규제하고자 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이 경우 정부는 오늘날 정부가 각 사업자단체에 과도한 행정행위(인허가, 증명 등)를 위임하고 이를 지렛대로 하여 사업자단체를 통하여 개별기업의 가격, 생산, 투자 등을 규제하는 이른바 행정지도라는 기업규제는 과감히 철폐하거나 최소한으로 해야 할 것이다.

2. 대규모기업집단의 경제력집중 억제와 경쟁체질의 강화

정부는 ①대규모기업집단의 계열회사에 대한 채무보증의 금지(1998.3.31까지 자기자본의 100%로 축소, 2001.9.31까지 완전 철폐)(96.9 법개정 방침 철회) ②대규모기업집단의 계열기업간 부당한 내부거래의 금지(신설) ③친족독립경영회사제도의 도입과 이들 기업의 모기업집단 기업간의 부당한 내부거래의 금지(신설)를 통하여 우리나라 대규모기업집단의 독과점 조성에 대한 원인 규제를 강화할 것을 예고하고 있다.

이른바 「재벌정책」의 핵심은 현행 대규모기업집단의 소유와 경영을 분리시키면서 경쟁력 있는 기업집단으로 발전시키느냐에 있다. 그러나 한편 오늘날 한국경제에 있어 대규모기업집단이 차지하는 비중이 이미 너무 커져버린데다가 금후 한국경제의 새로운 발전체제 구축과 경쟁력 있는 내실적인 성장 달성도 이들 대규모기업집단의 성장을 통해 이룩해 나갈 수 밖에 없음을 감안할 때 자칫 경제적 형편 증진이라는 일방적인 시각에서 「재벌정책」을 수행할 수 없는 어려움이 있다.

따라서 앞으로의 정부 「재벌정책」은 대규모기

업집단이 자율적인 기업경영 혁신을 통한 성장체질을 강화·혁신하도록 유도함과 동시에 대기업간 경쟁을 최대한 촉진시켜 독과점적인 자원배분과 이용의 낭비를 제거함은 물론 기술도입의 의존성과 개발의 안주를 제거토록 하는데 정책의 초점을 두어야 할 것이다.

이렇게 볼때 먼저 대규모기업집단의 자본 내지는 자금조달에 대한 규제(법 제10조 제1항과 제10조 2의 운용)는 양적 팽창을 압축시킴으로써 조달자금의 효율성을 기업 스스로가 따지도록 해야 함과 동시에 이에 못지않게 우리나라 금융산업의 대기업 편중의 자금공급방식과 관행도 시급히 개혁되어야 할 것이다.

현재 우리나라 금융산업의 경영방식은 「돈놀이」에 치중되어 있지 「돈장사」에는 그 경영기법이 가히 원시적인 것이 현실이다. 이점이 금번 OECD 가입에 있어 최대의 약점이다. 따라서 한국의 금융산업을 돈장사하는 금융이 되도록 개혁함으로써 대기업의 금융독식이 효율금융의 합리적이 되고 금융공급면에 뒷받침 되도록 해야 할 것이다.

이렇게 금융수급이 경쟁적인 시장원리에 따라 효율화 될 때 비로소 한국의 대규모집단의 경쟁체질이 강화되고 내실있고 발전체질적인 경제성장을 선도하게 될 것이다.

3. 기업결합의 제한범위 확대

현행 공정거래법은 일정 규모 이상의 기업(납입자본금 50억원 이상 또는 자산총액 200억원 이상)의 경쟁제한적 기업결합을 금지하고 있으나 이번 개정안에서는 이 제한을 삭제하여 경쟁제한적인 기업결합을 모두 금지하고 있고 특히 대기업과 중소기업간의 혼합기업결합(混合企業結合)을 대기업에 의한 중소기업에 대한 경쟁제한 행위로 추정하여 이를 금지함으로서 대기업 진입형의 기업결합을 규제하고자 하는 조항을 신설하고 있다.

이같은 기업결합 범위의 확대는 이 이상 더 새로운 시장지배적인 대기업에 허용하지 않겠다는 것이며 혼합기업결합의 규제는 새로운 친족독립경영회사가 기존 중소기업을 흡수하여 새로운 기업집단 형성의 가능성을 사전에 막자는 정책적인 의도가 있는 것으로 생각된다. 이에 대해 경제계에서는 현재정부가 중소기업 고유업종을 축소하고 있을뿐 아니라 OECD 가입과 함께 중소기업의 국제경쟁력 강화 기조에도 어긋난다고 반대하고 있다.

따라서 혼합기업결합에 대한 규제정책이 앞으로 장려되어야 할 이종기업간의 융합기술혁신의 촉진을 저해하지 않는 선에서 효율적인 법집행이 이룩되어야 할 것이다.

한편 정부는 이번 법개정에 있어 시장지배적 사업자의 형성과 강화를 방지하기 위한 시책을 수립, 추진하여야 하고 경쟁도입 등 독과점구조 개선에 필요한 의견을 관계 행정기관에 제시할 수 있다는 선언적 규정을 신설하고 한편 금융·보험업의 적용제외 특례규정(제61조)을 삭제하였다.

이는 현행 우리나라 독과점법이 원인규제주의가 아닌 폐혜규제주의 원칙에 입각하고 있다는 점에 비추어 선언규정의 현실화에는 무리가 따를 수 있음을 지적하면서 다만 금융산업의 개혁과 경쟁력 강화는 금융산업만의 발전이 아니라 앞으로 한국경제의 질적발전의 내실성장체제 구축과 전반적인 경쟁력강화의 출발적인 지렛대가 된다는 점에서 이 조항의 실효성 있는 실시를 기대하고자 한다. ■